



공고 제6호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

우리조합 정관 제44조에 의거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을 붙임과 같이 부의 합니다.

○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

2021년 12월 03일

산 청 군 산 림 조 합



1.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

1) 개정이유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에 따라 상임 조합장 또는 비상임 조합장을 두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법률 제17096호, 2020. 3. 24.]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26호, 2020. 9. 22.]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 전에 조합장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아울러 일부 조문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문의 문구 중 광역자치단체장을 명확히 하도록 함(제5조)
- 나. 자산총액이 「산림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1천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도록 함[제5장 (비고) 1 안]
- 다. 자산총액이 「산림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2천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임기개시일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함[제5장 (비고) 2 안]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안

산림조합정관(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조합의 사업>

제5조제1항제12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비고) 2.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 ① 본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제5조(사업) ① ----- ----- ----- -----.
1. ~ 11. (생 략)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u>시·도지사</u> 의 승인을 받은 사업	1. ~ 11. (현행과 같음) 12. ----- ----- 특별시장 · <u>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장 임원과 직원 <u><신 설></u>	제5장 임원과 직원 <u>(비고) 1.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 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u>

(비고) 2. 이 정관 시행 후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으로서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 제71조 제3항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 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반드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2.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 정관

1) 개정이유

「산림조합법」 [법률 제18024호, 2021. 4.13.]의 개정으로 산림소유자의 조합원 가입기준이 되는 최소 산림면적이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새롭게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소유 산림면적에 관한 사항을 정관(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주의 최소 산림 소유 면적을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조합별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함. (제13조제3항 신설)

산림조합정관(예) 일부개정정관

산림조합정관(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

(비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은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 자격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지역조합의 경우></p> <p>제13조(조합원의 자격 등)</p> <p>① 및 ② (생 략)</p> <p><u>③ <신 설></u></p>	<p><지역조합의 경우></p> <p>제13조(조합원의 자격 등)</p> <p>① 및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u></p> <p><u>(비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 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은 300제곱 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 서 정한다.</u></p>